

『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14.12.30)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고
-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동별 기 위촉된 복지위원들을 재정비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 목적(안 제1조)
- 복지위원의 위·해촉, 임기, 정수, 직무, 의무 사항 기재(안 제2조 ~ 안 제7조)
- 복지위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회의, 수당, 증표교부 등 규정(안 제8 ~ 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4조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T/F팀과 합의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구미시 복지위원 운영 목적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까지 구미시 복지위원의 위·해촉, 임기, 정수, 직무 및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」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4조의 복지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 위촉된 복지위원들을 재정비하고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로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